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 공고

슬레이트 노후화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 및 이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6.

### 화성시 환경사업소장

#### □ 사업개요

- 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02. ~ 12.
- 사업비 : 681,800천원(국 50%, 도 7.5%, 시 42.5%)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 단,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부지 내 부속 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예시1) 주택 부지내 주택 1개와 창고 2개가 있어 2018년에 주택 1개 철거·처리 지원 받고, 2020년에 나머지 창고 2개를 철거·처리 신청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예시2) 400㎡ 면적의 축사 1채를 2019년에 200㎡ 면적에 대해 철거·처리 지원받고, 2020년에 나머지 200㎡ 면적에 대해 철거·처리 신청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물량 : 약 175동 (주택 140, 비주택 35)
- 지원금액

구분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비고
주택철거	전액 지원	최대 352만원	1동 기준
비주택(창고,축사)철거	200㎡이하 전액 지원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 금액 지원이 아닌 **시에서 직접 철거, 처리**하는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 슬라이트** **플량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주택의 범위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과 같은 부지 내 창고, 축사는 주택에 포함)
- 본 사업은 **개별철거 후 처리비용 요구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2. 26.(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예정]
- 접수처 : 기후환경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읍면동은 서류접수만 가능하며 모든 사업문의는 기후환경과로 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1) 슬라이트 처리사업(건축물 철거) 지원신청서 1부 [제1호 서식]
  - 2) 슬라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제1-1호 서식]
  -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1부
  - 4) 위임장 및 증빙서류 각 1부 [제2호 서식] (해당할 경우)
    - ※ 건축물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작성, 건축물소유자가 타인(가족 포함)에게 슬라이트 해체·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 5) 동의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제3호 서식] (해당할 경우)
    - ※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 작성
  - 6)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증명서류 1부 (해당할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7) 완전철거 확인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1부 [제4호 서식]
  - 8)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 재산세 납부 시)
  - 9) 사업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건축주 사망 후 명의변경 안된 경우) [제5호 서식]
  - 10) 사업참여 포기서 1부 (중도에 사업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제6호 서식]

### 〈참고〉 제출서류 작성 방법

- ① 신청인과 건축주, 토지주가 동일한 경우 [제1호, 제1-1호 서식]
  - 신청서(슬라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만 작성 후
  -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1부 첨부
- ② 신청인과 건축주가 다른 경우 [제1호, 제1-1호, 제2호 서식]
  - 신청서(슬라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 및 위임장을 작성 후
  -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 ※ 건축주가 여러 명일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각각 위임장을 받아야 함 (각각 인감증명서도 제출必)

③ 신청인과 토지주가 다른 경우[제1호, 제1-1호, 제3호 서식]

- 신청서(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 및 동의서를 작성 후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 ※ 토지주가 여러 명일 경우 해당 토지주에게 각각 동의서를 받아야 함  
(각각 인감증명서도 제출必)

□ 사업별 우선 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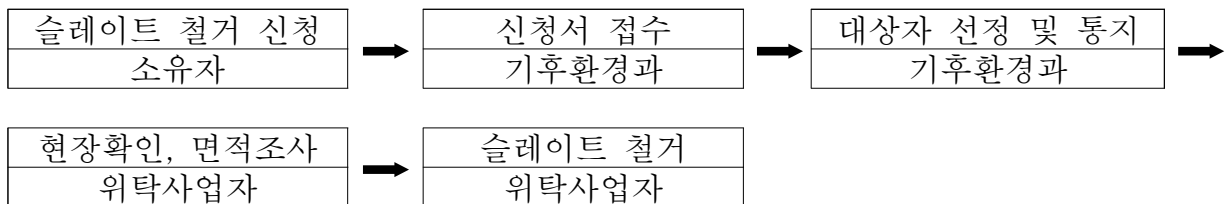
○ 사업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작은 면적 → 건축물 노후정도
-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 타 사업 :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 사업대상자 선정

- 건축물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현장확인 및 면적조사 등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함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절차 및 참고사항



※ 주의사항: 대상자 통지 받은 후에도 현장확인, 면적조사 과정에서 문제 시 대상자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해당되는 슬레이트 건축물 부분만 지원되고 **슬레이트와 무관한 지붕개량 및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 처리**
- 건물 소유자(거주자)와 철거일정 및 추가비용 협의가 완료된 건물 우선 철거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비용은 신청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화성시와 위·수탁협약 체결된 기관에 지급**
- **건축물 전체 철거에 따른 건축물 해체, 멸실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은 건축주가 사전에 화성시 건축부서의 절차를 선행하여야 함(지붕만 철거할 경우 해당 없음)**

- 건축물 해체, 멸실 관련 문의처

도시주택국 건축관리과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마도, 서신, 비봉, 매송	봉담, 남양, 팔탄, 송산, 양감, 우정, 새솔동	향남, 장안	오산동, 청계동, 중동, 목동, 방교동, 산척동, 능동	장지동, 영천동, 금곡동, 신동, 반송동, 석우동, 송동	그 외 동부지역
☎ 031-5189-6394	☎ 031-5189-7100	☎ 031-5189-6356	☎ 031-5189-6743	☎ 031-5189-6741	☎ 031-5189-4233 031-5189-4234 031-5189-4747 031-5189-4709 031-5189-4711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 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계획」 등 관련 규정과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두절 또는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 목적 이외 사용
-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후 사정 등의 변경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

**□ 슬레이트 처리사업 기타 문의 사항 :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031-5189-6722)**